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귀중

[도입문단]

본인은 정관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별송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할 책임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간문단]

본인은 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가 제정한 특정목적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수행기관이 제시한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감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견문단]

본이 상기 감사과정에서 사용한 통상적인 회계 및 관리지침에 준거하여 감사한 결과 제시받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는 적정함을 인정합니다.

[기타사항]

-상기 의견문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의한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의 기금관련 계정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회계처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은 세출결산서의 지출내역과 명시적인 매칭 확인(근거자료 구비 포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유형자산금액은 자산관리대장상 금액과도 명시적인 매칭(보조금과 자체 구분식별 포함)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명시한 (필수)주석사항도 재무제표의 일부이므로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운영성과표상의 차량비와 관리용역비는 시설비용으로, 포상비는 분배비용으로, 이자수익은 수익사업으로 (계정)분류 되어야 합니다. 2024년말 1년 이상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과 그에 대한 퇴직연금(DC형)불입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 및 회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관 제35조의거 연맹의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는 재무상태표상에 존재하는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 이남길



2025년 2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5년 2월 20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조합의 사업 및 결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